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0일, 조은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은희의원)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그 기관·단체에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기관·단체가 받은 징계요구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8제2항・제3항 신설,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 각 체육단체 등의 징계위원회는 단체 내부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대한체육회 및 산하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는 법제상벌위원회를 두고 있음.

- 2024년 9월 9일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음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도 체육회 등 산하 단체들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제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개정 예정임.

개정안은 이러한 체육단체 등의 개선노력에 맞추어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하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도 민간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스포츠윤리센터는 주요 체육단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현직 기관·단체장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단체에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 판례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조은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